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18일, 우재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우재준 의원)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의사가 직접 시진·촉진·타진·청진을 통하여 진료할 수 없다는 한계(환자정보 부족 및 시설·장비의 한계로 인한 진료의 불완전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비대면진료의 허용여부 및 범위는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성과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그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